설계변경심의 의견서

공 사 명	공항빗물펌프장 증설공사
요 청 자	제삼차, 양윤식

검 토 의 견

1. 제비율 검토
   - o 간접노무비 요율을 9.9%로 적용하고 있음 (조달청 제비율요율표 9.7%)
     → 공사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9.7% 적용
2. 철근가공조립
   - o 철근가공조립 수량에 재료할증분 적용 → 설치비에 대한 수량할증(3%)은 제외
3. 견적단가 적용
   - o 출입문 등의 제작견적단가에 대해 재료비, 노무비, 경비 반영
     → 외주 주문제작의 경우 경비 또는 재료비로 적용
   - o 각 파이프 틀설치 단가 적용시 표준품셈 상 '잡철물제작설치'를 적용하여 일위대가 및 내역 작성요망 (현재 견적처리)
4. 블록포장걷기
   - o 보도블록 포장걷기를 유용을 위한 걷기품 적용 → 폐기물 처리 품의 적용(서울형 개선품셈)
5. 토공
   - o 터파기와 되메우기 및 다짐 수량 불일치 → 식재를 위한 현장 무대 유용(수량산출서에 명기)
6. 옥상기존방수 걷기
   - o 콘크리트 깨기 품 적용 → 품셈에 근거한 실제 적용 방법에 의한 대가 산출
7. 방수공사 부분
   - o 방수공사 중 노출우레탄 방수 규격 수정요망 (현재 고무아스팔트로 되어있음)
8. 유리공사 부분
   - 유리공사 중 창호주위 코킹을 구조용코킹으로 적용 한 것 수정요망
9. 기 타
   - 우레탄방수공사 부분 2013년 품셈으로 적용되어 2014년 품셈으로 적용 필요
   - 폴리싱타일붙임, 화강석 걸레받이 등 2014년 품셈으로 적용 필요

심의위원회	심의 위원장 : 시설안전본부장	허 명 선	(인)
	심 의 위 원 : 공사감독1처	백 승 권	(인)
	심 의 위 원 : 공사감독2처	김 희 웅	(인)
	심 의 위 원 : 공사감독2처	기 철 주	(인)
	간 사 : 공사감독1처	박 규 욱	(인)